

'91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 支出

檢 討 報 告 書

1992. 12.

內 務 委 員 會
專 門 委 員

목 차

I. 결산 현황		161
○ 세입결산 총괄		162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164
○ 세출결산 총괄		168
○ 과목별 세출결산		169
II. 기획관리실 소관		171
III. 내무국 소관		177
IV. 재무국 소관		183
V. 공보관실 소관		186
VI. 민방위국 소관		188
VII. 소방본부소관		192
VIII. 공무원교육원 소관		194
IX. 증명출장소 소관		198

I. 결 산 현 황

I. 결 산 현 황

1. 세입결산총괄

(단 위 : 백 만 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징 결 정 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1:3	2:3		
합 계	410,609	453,663	444,198	108.2	97.9	179	9,286
일 반 회 계	335,512	375,666	368,935	110.0	98.2	122	6,609
특 별 회 계	75,097	77,997	75,263	100.2	96.5	57	2,677
○ 공 기 업							
- 공영개발사업	27,997	30,263	27,586	98.5	91.1	-	2,677
- 지역개발기금	31,647	31,810	31,810	100.5	100	-	-
○ 도로보수중기 운 영 관 리	1,443	1,349	1,349	93.4	100	-	-
○ 주 택 사 업	1,171	1,680	1,680	143.5	100	-	-
○ 의 료 보 호 기 금	11,788	11,740	11,740	99.6	100	-	-
○ 새 마을 소 득 지 원	414	438	438	105.8	100	-	-
○ 공 유 립 관 리	637	717	660	103.7	100	57	-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106억 9백만원에 대하여 110%에 해당하는 4,536억 6천 3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430억 5천 4백만원은 일반회계가 93.3%인 401억 5천 4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7%인 29억이 징수 결정 되었음.
- 미수납액 92억 8천 6백만원은 일반회계가 71%인 66억 9백만원 특별회계가 26억 7천 7백만원으로 29%임
- 불납결손액 1억 7천 9백만원 내역은 일반회계가 1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5천 7백만원임.

2. 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1)	정결 정액 (2)	수납액 (3)	비 율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1:2	1:3	2:3		
합 계	335,511	375,665	368,934	112.0	110.0	98.2	122	6,609
지 방 세	66,560	104,125	97,810	156.4	146.9	93.9	98	6,217
세 외 수 입	82,873	86,943	86,527	104.9	104.4	99.5	24	392
○ 재산임대수입	38	51	48	133.5	126.6	94.9		3
○ 사용료수입	2,523	3,710	3,698	147.0	146.6	99.7		12
○ 수수료수입	3,501	3,836	3,836	109.6	109.6	100		-
○ 사업장수입	775	789	789	101.7	101.7	100		-
○ 이 자 수 입	1,900	2,905	2,905	152.9	152.9	100		-
○ 재산매각수입	4,420	5,333	5,320	120.7	120.4	99.8		13
○ 이 월 금	61,526	61,526	61,526	100.0	100.0	100		-
○ 부 담 금	3,967	4,204	4,204	113.7	113.7	100		-
○ 잡 수 입	4,142	4,405	4,159	106.4	100.4	94.4		246
○ 과년도수입	81	184	42	226.5	51.6	22.8	24	118
지 방 양 여 금	12,397	12,397	12,397	100.0	100.0	100		-
지 방 교 부 금	77,899	77,899	77,899	100.0	100.0	100		-
보 조 금	95,782	94,301	94,301	98.5	98.5	100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355억 1천 1백만원에 대하여 112.0%에 해당하는 3,756억 6천 5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401억 5천 4백만원의 내역은

· 지방세의 세원발굴등으로 375억 6천 5백만원

· 세외수입에서 40억 7천만원이 초과 징수 결정되었고, 국고보조금이 예산액보다 14억 8천 1백만원이 미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징수결정된 3,756억 6천 5백만원중 98.2%에 해당하는 3,689억 3천 4백만원이 수납 되었고,

미수납액 67억 3천 1백만원중 결손처분된 1억 2천 2백만원을 제외한 66억 9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징 결 정 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불 납 결 손 액 (4)	미수납액 (5) (2-3-4)
				1:2	1:3	2:3		
합 계	75,097	77,997	75,263	103.8	100.2	96.5	57	2,677
○공영개발사업	27,997	30,263	27,586	108.1	98.5	91.2		2,677
○지역개발기금	31,647	31,810	31,810	100.5	100.5	100		
○도로보수중기 운 영 관 리	1,443	1,349	1,349	93.5	93.5	100		
○주 택 사 업	1,171	1,680	1,680	143.5	143.5	100		
○의료보호기금	11,788	11,740	11,740	99.6	99.6	100		
○새마을 소득 지 원	414	438	438	105.8	105.8	100		
○공유림관리	637	717	660	112.5	103.7	92.1	57	

○ 공영개발사업등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50억 9천 7백만원에 대하여 103.9%에 해당하는 779억 9천 7백만원을 징수결정 하므로써 29억원이 초과징수결정되었는바,

그 내용은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억 6천 6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억 6천 3백만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 9백만원
-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천 4백만원
-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8천만원이 초과징수 결정된 반면
- 중기관리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에 미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중기관리 특별회계 ▲ 9천 4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4천 8백만원

○ 징수결정된 779억 9천 7백만원중 96.5% 해당액인 752억 6천 3백만원을 수납하였고 26억 7천 7백만원이 미수되었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서 5천 7백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음.

3. 세출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1)	지출원인 행 위 액 (2)	지 출 액 (3)	비 율 1:3	다음년도 이 월 액 (5)	불 용 액 (6)
합 계	410,609	360,358	349,377	85.1	21,423	39,809
일 반 회 계	335,512	314,417	303,865	90.6	20,993	10,654
특 별 회 계	75,097	45,941	45,512	60.6	430	29,155
○ 공 기 업	59,644	31,556	31,127	52.2	430	28,087
- 공영개발사업	27,997	16,345	15,916	56.8	430	11,651
- 지역개발기금	31,647	15,211	15,211	48.1		16,436
○ 도로보수중기운영 관리	1,443	1,179	1,179	81.7		264
○ 주 택 사 업	1,171	1,006	1,006	85.9		165
○ 의료보호기금	11,788	11,598	11,598	98.4		190
○ 새마을소득지원	414	412	412	99.4		2
○ 공 유 립 관 리	637	190	190	29.9		447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4,106억 9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 3,493억

7천 7백만원으로서 평균 85.1%를 집행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 결산액이 90.6%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60.6%임.

4. 과목별 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1)	원행 인액 위액 (2)	지 출		다음년도 이월액 (4)	불용액 (5)
			금액(3)	비율		
합 계	335,512	314,417	303,865	90.6	20,993	10,654
의 회 비	2,817	2,236	2,236	80.7	-	581
일 반 행 정 비	29,517	23,349	22,097	73.9	5,227	2,193
사 회 복 리 비	46,206	44,052	42,295	91.5	2,096	1,815
산 업 경 제 비	69,650	62,982	62,663	90.0	5,253	1,734
지 역 개 발 비	133,513	131,073	123,939	92.8	8,327	1,247
문 화 및 체 육 비	11,630	11,120	11,030	94.8	90	510
민 방 위 운 영 비	2,141	2,018	2,018	94.2		123
지 원 제 비	40,038	37,587	37,587	93.9		2,451

○ 1991년도 지출액은 3,038억 6천 5백만원으로 예산규모 3,355억 1천 2백만원

대비 90.6%이며 예산현액의 6.2%인 209억 9천 3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

나.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다음년도 이월액	불 용 액 (5)
			금 액	비율		
합 계	75,097	45,941	45,512	60.6	430	29,155
○ 공 영 개 발 사 업	27,997	16,345	15,916	56.8	430	11,651
○ 지 역 개 발 기 금	31,647	15,211	15,211	48.1		16,436
○ 도로보수중기운영 관리	1,443	1,179	1,179	81.7		264
○ 주 택 사 업	1,171	1,006	1,006	85.9		165
○ 의 료 보 호 기 금	11,788	11,598	11,598	98.4		190
○ 새마을 소득 지원	414	412	412	99.4		2
○ 공 유 릫 관 리	637	190	190	29.9		447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의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750억 9천 7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55억 1천 2백만원으로서 60.6%를 집행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의 불용액을 보면

- 중기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2억 6천 4백만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 불용액 1억 6천 5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1억 9천만원
-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불용액 2백만원
-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불용액 4억 4천 7백만원임.

II. 기획관리실 소관

II. 기획관리실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36,106	19,063	297	16,746
일반회계	소계	4,459	3,852	297	310
	기획관리	2,393	2,306	-	87
	예산통합관리	1,188	1,034	-	154
	예산편성관리	86	78	-	8
	행정감사	58	53	-	5
	법무관리	67	63	-	4
	재산관리	590	249	297	44
	통계관리	77	69	-	8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31,647	15,211	-	16,436

○ 기획관리실 소관의 총 예산현액은 361억 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억 5천

9백만원 (12.3%)이며, 특별회계가 316억 4천 7백만원 (87.7%)임

○ 총 예산현액중 190억 6천 3백만원이 지출되고 2억 9천 7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46.3%인 167억 4천 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분야에 있어서

불용액 3억 2백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2억 7천 7백만원으로 불용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이 2천 4백만원, 제세공과금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백만원이며

○ 전산 및 통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 5천 2백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4천 2백만원으로 불용액의 80.7%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절감액은 1천만원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절약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산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세분하여 보면

· 기획관리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44억 5천 9백만원 대비 53.6%인 23억 9천 3백만원으로 96.3%인 23억 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6%인 8천 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내역으로서는

- 인 건 비 3천 1백만원
- 관서운영비 2천 4백만원
- 기본경상비 1천만원
- 경상사업비 2천 2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7천 7백만원으로 불용액 대비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은 1천만원임.

- 예산통합 및 편성관리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28.5%인 12억 7천 4백만원으로 87.3%인 11억 1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2.7%인 1억 6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내역으로서는
 - 인 건 비 1백만원
 - 관서운영비 5천 3백만원
 - 기본경상비 5천 4백만원
 - 경상사업비 5천 4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억 5천 1백만원으로 불용액 대비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은 1천 1백만원임.

○ 행정감사비에 있어서는

- 예산총액 대비 1.3%인 5천 8백만원으로 91.4%인 5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6%인 5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 관서운영비 1백만원
 - 기본경상비 2백만원
 - 경상사업비 2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3백만원, 예산절감액이 2백만원임.

○ 법무관리비에 있어서는

- 예산총액 대비 1.5%인 6천 7백만원으로 94.0%인 6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0%인 4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 기본경상비 1백만원
 - 경상사업비 3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2백만원이며, 예산절감 1백만원, 제세공과금 사유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인 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전산관리비에 있어서는

- 예산총액 대비 13.2%인 5억 9천만원으로 42.2%인 2억 4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0.3%인 2억 9천 7백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이는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용역비 5천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전산기기도입비 2억 4천 7백만원이 이월되는 것으로서 익년도에 계속 집행하도록 이월 조치하였고, 7.5%인 4천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 관서운영비 9백만원
- 기본경상비 1천 5백만원
- 경상사업비 5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3천 4백만원, 예산절감액이 1천만원임.

○ 통계관리비에 있어서는

- 예산총액 대비 1.7%인 7천 7백만원으로 89.6%인 6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0.4%인 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 기본경상비 4백만원
- 경상사업비 4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7백만원 및 예산절감액이 1백만원임.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시보다 실질적이고 절약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회계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31,647	15,211	-	16,436
수익적지출	754	672	-	82
자본적지출	30,893	14,539	-	16,354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316억 4천 7백만원중 48.1%인 152억 1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1.9%인 164억 3천 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 이를 세부하여보면

·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7억 5천 4백만원중 89.1%인 6억 7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0.9%인 8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예비비 집행사유미발생분 7천 9백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3백만원으로 이견이 없으며,

·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308억 9천 3백만원중 47.1%인 145억 3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2.9%인 163억 5천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나,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163억 5천 4백만원으로 이견이 없음.

Ⅲ. 내 무 국 소 관

Ⅲ. 내 무 국 소 관

1.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51,504	45,994	4,162	1,348
일반 회 계	소 계	51,090	45,582	4,162	1,346
	총무인사행정	5,980	5,524	-	456
	문서통신관리	419	382	-	37
	시군행정운영	3,376	3,281	-	95
	새마을사업	4,232	4,173	-	59
	지역개발	21,157	20,868	207	82
	문화예술진흥	3,243	3,177	60	6
	문화재 관리	3,918	3,677	29	212
	체육진흥	4,062	3,782	-	280
	도민교육원운영	4,703	718	3,866	119
	특별 회계	새마을소득지원	414	412	-

○ 내무국 소관의 총 예산현액은 515억 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10억 9천만원

(99.1%)이며, 특별회계가 4억 1천 4백만원 (0.9%)임.

○ 총 예산현액에서 459억 9천 4백만원이 지출되고 41억 6천 2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3%인 13억 4천 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총무인사 행정분야에 있어

- 예산현액 510억 9천만원 대비 11.7%인 59억 8천만원으로 92.4%인 55억 2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7.6%인 4억 5천 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불용액 4억 5천 6백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2억 8천 1백만원으로 불용액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 2천 4백만원, 해외여행, 수당, 연료, 의료비등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잔액이 1억 4천 7백만원, 계획 변경 취소분이 4백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제수당등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시 적절한 수요를 판단. 책정하여야 할 것임.

○ 문서통신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 예산총액 대비 0.8%인 4억 1천 9백만원으로, 91.1%인 3억 8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8.8%인 3천 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불용액 3천 7백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3천 1백만원으로 불용액의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 5백만원, 일용인부임 지출계획 변경취소분 1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때 통신관리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자본보조등의 집행잔액이므로 이견이 없음.

○ 시군 행정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 예산총액대비 6.6%인 33억 7천 6백만원으로 97.2%인 32억 8천 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8%인 9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예산절감분이 5백만원, 예산집행잔액분이 6백만원, 기타 사업계획 및 자본보조 변경취소분이 8천 4백만원으로서

- 사업추진시 예산사유 분석, 적기사업 시행여부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새마을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8.3%인 42억 3천 2백만원으로 98.6%인 41억 7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4%인 5천 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 불용처리 요인으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분이 4백만원, 예산절감분이 5백만원, 예산집행잔액분이 5천만원으로서 이견이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41.4%인 211억 5천 7백만원으로 98.6%인 208억 6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 1.0%인 2억 7백만원이 증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계속을 위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4%인 8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요인으로는 불용액 8천 2백만원 전액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이견이 없음.

○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6.3%인 32억 4천 3백만원으로 98.0%인 31억 7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8%인 6천만원은 충북도지 증보발간을 위해 익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0.2%인 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요인으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분이 2백만원, 집행잔액 4백만원으로 이견이 없음.

○ 문화재관리분야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7.6%인 39억 1천 8백만원으로
- 93.8%인 36억 7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7%인 2천 9백만원은 미룩사지 주변 정비 용역비로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4%인 2억 1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분이 7천 2백만원, 예산절감이 5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천 5백만원, 기타 사업계획 변경 취소 3천 5백만원으로서 예산편성에 부수 되는 상황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체육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대비 7.9%인 40억 6천 2백만원으로 93.1%인 37억 8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6.9%인 2억 8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분이 5백만원, 예산절감이 2백만원, 예산집행잔액 3천 5백만원, 기타 자본보조 변경 취소분이 2억 3천 8백만원임

○ 도민교육원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 총 예산현액 대비 9.2%인 47억 3백만원으로 15.2%인 7억 1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의 82.2%인 농민교육원 청사 이전 신축비 38억 6천 6백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5%인 1억 1천 9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분이 2천 4백만원, 예산절감 2천만원, 예산집행잔액 5천 1백만원, 기타 사업계획 변경 취소 2천 4백만원으로, 사업추진시 예산 사유 분석, 적기사업시행 여부등 예산편성상황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회계 세출결산

- 내무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인 4억 1천 4백만원중 99.5%인 4억 1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0.5%인 2백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전액 소득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여비 및 용자금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이견없음.

IV. 재 무 국 소 관

IV. 재 무 국 소 관

1.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7,828	3,335	3,854	639
수입 및 지적 관리	150	143		7
회계 및 재산 관리	7,678	3,192	3,854	632

○ 재무국 소관의 총 예산현액은 78억 2천 8백만원으로 이중 42.6%인 33억 3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9.2%인 38억 5천 4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2%인 6억 3천 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2. 세출결산

○ 재무국소관 분야 불용액 6억 3천 9백만원중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분이 4억 6천 5백만원, 예산절감 3천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 4천 3백만원, 기타 사업계획 변경 취소분이 1백만원으로서 사업추진시 적기사업 시행여부등 예산편성에 부수되는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세분하여 보면

· 수입 및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총 예산현액대비 0.07%인 1억 5천만원중 95.3%인 1억 4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6%인 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전액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이점이 없음.

· 회계 및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현액 대비 98.1%인 76억 7천 8백만원중 41.6%인 31억 9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50.2%인 38억 5천 4백만원은 지방의회 의사당과 덕유초소 개축비 및 토지매입비로서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8.2%인 6억 3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불용처리 원인으로는

예산집행 사유미발생분이 4억 6천 5백만원, 예산절감 2천 7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1억 4천만원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V. 공 보 관 실 소 관

V. 공보관실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842	787	-	55

- 공보관실 소관의 예산현액 8억 4천 2백만원중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6.5%인 5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 세출결산

- 공보관리 분야 불용액 5천 5백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4천 1백만원으로 불용액의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 1천만원, 계획변경취소분이 4백만원인바, 이를 세분하여 보면 인건비 5백만원, 관서운영비 5백만원, 기본경상비가 2천 5백만원, 경상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들로 사료되기에 이견이 없음.
- 향후 예산편성시 집행 감액발생등 불용액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실질적이고 절약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촉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VI. 민 방 위 국 소 관

VI. 민 방 위 국 소 관

1. 세 출 총 관

(단 위 : 백 만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487	1,386	-	101
민 방 위 관 리	1,260	1,206	-	54
민방위 운영관리	1,026	995		31
민방위 시설장비	115	102		13
민방위 교육훈련	119	109		10
비 상 대 책	59	51		8
비상대비 업무	49	43		6
청원경찰 관리	8	7		1
예비군 관리	2	1		1
지 역 안 정	168	129		39
지 역 안 정	85	47		38
방 범 활 동	83	82		1

○ 민방위국 소관의 예산현액 14억 8천 7백만원중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6.7%인 1억 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2. 세출결산

○ 민방위국 소관 불용액 1억 1백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9천 2백만원으로 불용액의 9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 8백만원,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1백만원으로서

○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 민방위 관리비에 있어

예산현액 14억 8천 7백만원 대비 84.7%인 12억 6천만원중 4.2%인 5천 4백만원,

· 비상대책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3.9%인 5천 9백만원중 13.5%인 8백만원,

· 지역안정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11.2%인 1억 6천 8백만원중 23.2%인 3천 9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이를 세분하여 보면

· 민방위 관리비 5천 4백만원중

- 민방위 운영관리 3천 1백만원

- 민방위 시설장비 1천 3백만원

- 민방위 교육훈련비 1천만원으로

집행잔액 5천만원 및 예산절감액이 4백만원인바, 이는 인건비 2천만원, 자산 취득 및 용역비 1천 5백만원등 기타 1천 5백만원이며 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 비상대책비는 8백만원중

- 비상대비 업무 6백만원

- 청원경찰 관리 1백만원

- 예비군 관리 1백만원으로

집행잔액 7백만원 및 예산절감액 1백만원이며,

· 지역안정비는 3천 9백만원중

- 지역안정 3천 8백만원

- 방법활동 1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백만원이며, 공공요금 계획변경 취소 집행잔액이 3천 6백만원임.

이는 소방본부가 분리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사료됨.

VII. 소방본부소관

Ⅶ. 소방본부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437	426	-	11
소방행정 관리	22	12		10
소방시설 장비관리	414	413	-	1

- 소방본부 소관의 총 예산현액 4억 3천 7백만원중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2.5%인 1천 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2. 세출결산

소방본부 소관 불용액 1천 1백만원중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1백만원이며 소방부조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있어 신고건수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천만원으로 적정한 예산운용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VIII. 공무원교육원소관

Ⅷ. 공무원교육원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930	880	-	50
교무관리	750	720		30
교관관리	38	28		10
교학관리	142	132		10

○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예산현액 9억 3천만원중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5.3%인 5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2. 세출결산

공무원교육원소관 불용액 5천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3천 6백만원으로 불용액의 7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 7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백만원, 변경취소분이 5백만원으로 거의 대부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들로 사료되기에 이견이 없음.

○ 이를 세분하여 보면

○ 교무관리비에 있어서

예산총액 9억 3천만원 대비 80.6%인 7억 5천만원으로 96.0%인 7억 2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0%인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 인 건 비 2백만원
- 관서운영비 1천 8백만원
- 기본경상비 3백만원
- 경상사업비 7백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천 5백만원이며, 예산절감액 3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 교관관리비는

· 예산총액대비 4.1%인 3천 8백만원으로 73.7%인 2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6.3%인 1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 기본경상비 1백만원
- 경상사업비 9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2백만원이며, 예산절감액 3백만원, 자산취득의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 교학관리비에 있어서는

· 예산총액 대비 15.2%인 1억 4천 2백만원으로 93.0%인 1억 3천 2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7.0%인 1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 기본경상비 5백만원

- 경상사업비 5백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9백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백만원 인바,

○ 집행에 이견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적정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X. 증 명 출 장 소 소 관

Ⅸ 증평출장소 소관

1. 세 출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1,757	8,064	2,755	938
일 반	일반행정비	5,683	4,055	1,076	552
	사회복지비	1,469	919	373	177
	산업경제비	380	352	-	28
	지역개발비	3,923	2,450	1,306	167
	문화체육비	86	83	-	3
	민방위비	216	205	-	11

○ 증평출장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17억 5천 7백만원임

○ 현액에서 80억 6천 4백만원이 지출되고 27억 5천 5백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예산현액의 7.9%인 9억 3천 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56억 8,292만원중 40억 5,515만원이 지출되고 10억 7,628만원은 사업의 계속을 위해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액의 9.7%인 5억 5,14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계획변경 취소	776만원
예산절감	4,070만원
예산집행 잔액	5억 303만원으로서

- 이는 개청후 인력보충지연으로 인한 각급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등이 과다 책정된바 출장소 개청에 따른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책정 된것으로 금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됨

- 재무행정비 주요사업비중 관사매입비

1억 500만원은 년내 매입이 지난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증평 시민회관 계속사업비 9억 7,129만원은 동절기 공사중단등 여건 변동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 한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14억 6,909만원중
9억 1904만원이 지출되고 3억 7,336만원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액의 12%인 1억 7,669
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예산집행 사유 발생	1,412만원
예산절감	1,297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960만원으로서

- 사회복지관 개관 지연에 의한 장비 및 인원충원 지연에 따른
보조금 잔액과 미화요원 충원지연등 각급 인건비, 보건기관
운영비등에서 불용처리 된것임

- 금후 사업추진 실태분석과 인력충원 시기등을 고려한 예산책정
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환경위생관리 주요사업비중

오물매립장 부지매입비 3억 3,000만원은 지주와 부지매입 승낙
등으로 년내 매입이 지난하여 명시이월 조치하고 쓰레기
매립장 성토비 4,336만원은 신설쓰레기장 설치지연으로 불가피
하게 사고이월 처리한것으로 사료됨

○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이 3억 7,987만원중 3억 5,1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액중 7.3%인 2,82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불용처리 원인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1,059만원
예산집행미집행 사유	268만원
예산절감	185만원
예산집행	1,312만원으로

- 불용액 2,824만원중

축산폐수간이정화조(3개소), 돼지수출원료돈 생산 농가사료지원
(2000두), 보조금 1,040만원과 뽕발동력에취기(1대) 19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취소 되었으며

- 한국농민 신문 구독 60만원, 농가꼬리포 제작 30만원이 취소
되었으며, 농산관리 보조금 487만원 축산공수의 수당 225만원
지역특산물 직판장 설치비 160만원 원예잠특 보조금 200만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 향후 사전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에 신중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39억 2,262만원중
24억 4,955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99만원이 익년도 이월하였으며
현액의 4.2%인 1억 6,7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
- 주요사업비중 13억 599만원은
새마을소규모사업비 3억원은 제3회 추경분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지역개발 주요사업비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9,470만원,
가로축조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9,215만원과 상수도시설확장
사업(7천t / 일→10천t / 일) 5억 8592만원 보강하천 정비 2억
270만원 새마을사업 3건 2,220만원 창동하수구공사 832만원등
총 10억 599만원등으로 이는 중앙부처 승인과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계속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사료
되어 이견이 없습
- 불용액 1억 6,708만원중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140만원이며
예산절감 809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759만원으로서 당초예산
편성당시 과다채정 된것으로 사료되며
- 주요사업중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7,036만원은 과다불용 처리
된바 금후 신중히 사업을 검토 예산을 책정하여야겠습

○ 문화체육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8,675만원중
8,3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1%인 35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 예산절감 13만원
 - 예산집행잔액이 344만원으로
- 문예예술진흥비 도 예술제출전 및 괴산문화제 출전비 500만원
중 집행잔액 230만원과 체육행사등의 집행잔액 70만원등으로
이전이 없습

○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2억 1,668만원중
2억 528만원이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2%인 1,1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
- 불용처리 원인으로서는
 -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49만원
 - 예산절감 209만원
 - 예산집행잔액 881만원으로서
- 이는 민방위비 387만원 소방행정관리 753만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서 이전이 없습

3.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처리일자
증명출장소	166	155	11	91. 12. 20

증명출장소 개소에 따른 추경전 지출을 요하는 주요사업비로 1억 5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점이 없음.